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1424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21548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142424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배, 김지화

변 론 종 결 2021. 6. 15.

판 결 선 고 2021. 7.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9.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C에게 합계 83,000,00원을 대여하였고, C 등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머3627호)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9. 11. 13. C은 원고에게 2020. 2. 14.까지 83,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9. 4. 8. F에게 위 E에 대한 식품영업자 지위를 양도하였고, F는 2019. 10. 16. 피고에게 E에 대한 식품영업자 지위를 다시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G'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 11,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던 C으로부터 'E' 운영을 위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합계 8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C이 운영하던 'E'의 영업을 양수하였고, 'E'라는 상호 또한 속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에 따라 상호속용인으로서 원고에게 C의 'E'영업과 관련한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 변제 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C에 대한 채무가 ‘E’의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아파트 분양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보라